



비엔피파리바 증권외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개

작성일: 2022.11.14

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및 동법시행령 제 50 조 3 항 3 호에 따라 비엔피파리바 증권외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1. 정보교류통제 담당 책임자 및 조직의 지정

-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책임자: 준법감시인 이선영 부문장
-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준법감시부

2.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

- ① 내부자 분류 (Insider Categorization)
- ② 예외적 정보교류 통제장치 (Wall Crossing)
- ③ 미공개중요정보 통제장치
- ④ 이해상충 식별, 예방 및 관리 절차 등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① 교류차단대상 정보:

자본시장법시행령 제 50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에서 정의된 정보

② 교류차단대상에서 제외된 정보:

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관련 내규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

4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및 임직원을 내부자 형태



(Permanent Insider, Above the Barrier 및 Occasional Insider) 별로 구분한 후, 각 부서를 해당 정보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가능성이 높은 Private Side 및 해당 가능성이 적은 Public Side 로 세분

5. 예외적 정보교류 요건 (Wall Crossing)

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해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APAC Control Room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책임자가 협업하여 Public Side 임직원을 관련 내규에 따른 Wall Crossing 절차를 준수하여 예외적 정보교류를 허용

6.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-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책임자 및 담당 조직은 내규에 따라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.

7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당사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이해상충의 예방을 위한 통제장치를 수립·운영한다.